

---

#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

---

2026. 1.

## | 머 리 말 |

최근 우리 건설산업을 둘러싼 안전보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 근절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삼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과거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객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자 작업중지권'입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근로자가 급박한 상황 이전의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사고 유형별 구체적인 권리 행사 사례부터, 카카오톡이나 전용 앱을 활용한 대형건설사들의 작업중지권 운영 노하우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이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올바르게 정착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과 근로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건설 현장의 안전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무재해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대한건설협회 회장 한승구

# | 목 차 |

## 제1장 권리행사 사례 (사고유형별)

|                              |    |
|------------------------------|----|
| 1. 추락                        |    |
| 01. 이동통로 설치 부적합 .....        | 07 |
| 02. 작업발판 미설치 .....           | 07 |
| 03. 개구부 덮개 설치 불량 .....       | 08 |
| 04. 개구부 주변 난간시설 미설치 .....    | 08 |
| 05. 추락위험구간 난간시설 설치 부적합 ..... | 09 |
| 06. 추락위험구간 난간시설 미설치 .....    | 09 |
| 07. 굴착 중 단부구간 발생 .....       | 10 |
| 08.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 .....        | 10 |
| 2. 충돌                        |    |
| 01. 지게차 과속 .....             | 12 |
| 02. 작업구간 주변 구획설정 미흡 .....    | 12 |
| 03. 차량 고임목 지지 불안정 .....      | 13 |
| 3. 낙하·비래                     |    |
| 01. 와이어로프 꺾임 .....           | 15 |
| 02. 굴착기 헤드가드 미설치 .....       | 15 |
| 03. 할석 잔재물 .....             | 16 |
| 04. 버킷 안전핀 미체결 .....         | 16 |
| 05. 안전모 미착용 .....            | 17 |
| 4. 전도                        |    |
| 01. 바닥 양카작업으로 이동시 위험 .....   | 19 |
| 02. 작업구간 결빙 .....            | 19 |
| 03. 작업 이동경로 결빙 .....         | 20 |
| 04. 지하층 조도 미확보 .....         | 20 |
| 05. 작업발판 간격 과다 .....         | 21 |
| 5. 협착                        |    |
| 01. 굴착기 전담 신호수 미배치 .....     | 23 |
| 02. 굴착기 협착방지봉 미설치 .....      | 23 |

제1장  
권리행사  
사례

(사고유형별)

|                             |    |
|-----------------------------|----|
| 6. 기타                       |    |
| 01. 분진으로 인한 작업 불가 .....     | 25 |
| 02. 용접 중 우천으로 감전 우려 .....   | 25 |
| 03. 화재감시자 미배치 .....         | 26 |
| 04. 그라인더 방호덮개 미설치 .....     | 26 |
| 05.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인출 불량 ..... | 27 |

제2장  
관리·홍보  
사례

|                             |    |
|-----------------------------|----|
| 01. 모바일 시스템 도입(카카오톡) .....  | 29 |
| 02. 모바일 시스템 도입(별도 어플) ..... | 33 |
| 03. 포상제도 운영 .....           | 36 |

제3장  
지침·기준

|                         |    |
|-------------------------|----|
| 01. 작업중지권 운영기준 예시 ..... | 39 |
|-------------------------|----|

제4장  
부록

|                                  |    |
|----------------------------------|----|
| 01. 작업중지권 관련 산안법령 규정 발췌 .....    | 44 |
| 02. 작업중지권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45 |
| 03. 근로자 안전활동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 46 |
| 04. 작업중지권 관련 고용부 설명자료 .....      | 47 |
| 05. 작업중지권 활용 가능 APP .....        | 49 |

## 제1장

# 권리행사 사례

(사고유형별)

## 1. 추락

## 이동통로 설치 부적합



### 내용

- 개구부 옆 이동통로 설치 부적정으로 추락우려



### 조치

- 작업중지 후 전용 이동계단 설치



## 작업발판 미설치



### 내용

- 철근 작업구간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우려



### 조치

- 작업중지 후 작업발판 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불량



### 내용

- 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불량으로 추락우려



### 조치

- 작업중지 후 덮개 정상설치



## 개구부 주변 난간시설 미설치



### 내용

- 개구부에 망 설치되어 있으나 보완요청



### 조치

- 작업중지 후 난간시설 설치 완료





## 추락위험 구간 난간시설 설치 부적합



## 내용

- 개구부에 난간시설 부실 설치



## 조치

- 작업중지 후 난간시설 설치 완료



## 추락위험구간 난간시설 미설치



## 내용

- 자재 반입구간 난간시설 해체로 추락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난간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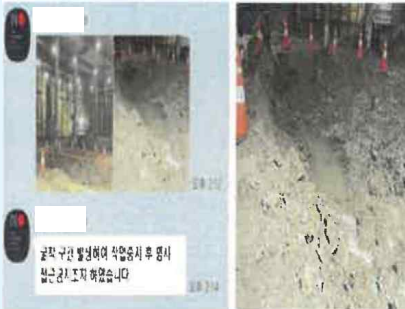


## 굴착 중 단부구간 발생



### 내용

- 굴착 중 단부구간 발생하여 추락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라바콘 설치 및 구획설정



##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



### 내용

-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



### 조치

- 작업중지 후 고리 체결 후 작업재개



## 2. 충돌

## 지게차 과속



### 내용

- 다른 공중 작업자의 지게차가 현장 내에서 과속



### 조치

- 작업중지 후 운전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작업구간 주변 구획설정 미흡



### 내용

- 클램셀 작업구간 주변 구획설정 미흡



### 조치

- 작업중지 후 작업구간 접근금지 구획설정



## 차량 고임목 지지 불안정



### 내용

- 경사지 정차한 레미콘 뒷바퀴 고임목 지지 불안정



### 조치

- 작업중지 후 고임목 정상 교체



### 3. 낙하

## 와이어로프 꺾임



## 내용

- 와이어로프 꺾임으로 낙하 우려



## 조치

- 작업중지 후 와이어로프 절단·폐기



## 굴착기 헤드가드 미설치



## 내용

- 하부에서 작업하는 굴착기 헤드가드 미설치



## 조치

- 작업중지 후 낙하물 보호용 헤드가드 설치





## 할석 잔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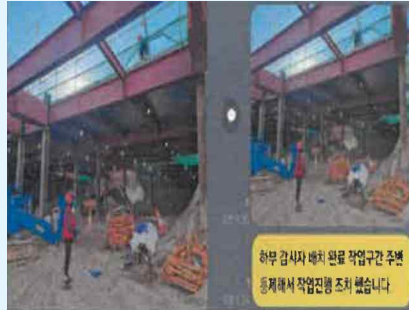
### 내용

- 상부 할석 잔재물 낙하·비레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감시자 배치 및 주변 통제



## 버킷 안전핀 미체결



### 내용

- 버킷 안전핀 미체결로 낙하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버킷 안전핀 체결





## 안전모 미착용



## 내용

- 안전모 미착용으로 낙하물 위험



조경작업 근로자 안전모 착용하고 작업 하도록 주의 당부 바랍니다.(현장소장님 지시사항)



## 조치

- 작업중지 후 안전모 착용 및 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및 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 4. 전도

## 바닥 양카작업으로 이동 시 위험



## 내용

- 바닥 양카작업으로 이동시 전도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시인성 시설물 설치



## 작업구간 결빙



## 내용

- 작업구간 결빙으로 근로자 전도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라바콘 설치 및 접근금지 조치



## 작업 이동경로 결빙



### 내용

- 작업 이동경로 결빙으로 근로자 전도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제설작업 실시



## 지하층 조도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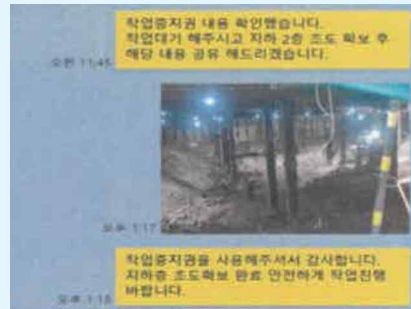
### 내용

- 지하층 가설등 정전발생하여 조도 미확보



### 조치

- 작업중지 후 조도확보



## 작업발판 간격 과다



### 내용

- 작업발판 간격 과다하여 전도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발판 이동설치 조치



## 5. 협착

## 굴착기 전담 신호수 미배치



내용

- 굴착기 전담 신호수 미배치로 협착위험



조치

- 작업중지 후 전담 신호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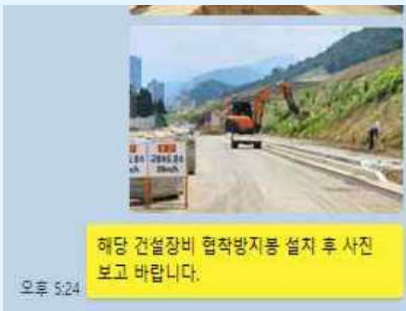


## 굴착기 협착방지봉 미설치



내용

- 굴착기 협착방지봉 미설치



조치

- 작업중지 후 굴착기 후방 협착방지봉 설치



## 6. 기타



## 분진으로 인한 작업불가



내용

- 할석작업 분진으로 인해 주변작업 불가



조치

- 작업중지 후 집진장치 설치 및 사용



## 용접 중 우천으로 인한 감전 우려



내용

- 용접 중 우천으로 근로자 감전 위험



조치

- 작업중지 후 기상상황 모니터링



## 화재감시자 미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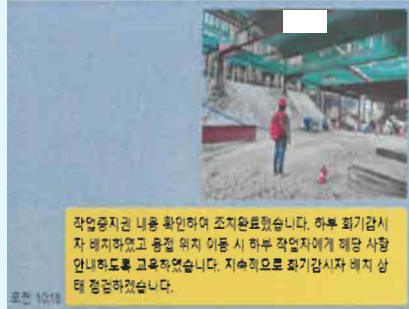
## 내용

- 화재감시자 미배치로 불티 비산 및 화재 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화재감시자 배치



## 그라인더 방호덮개 미설치



## 내용

- 핸드그라인더 방호덮개 미설치로 절단위험



## 조치

- 작업중지 후 방호덮개 설치



##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인출 불량



### 내용

-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 인출상태 불량



### 조치

- 작업중지 후 100% 인출 확인 후 작업재개



## 제2장

### 관리·홍보 사례

## 모바일 시스템 도입 (카카오톡)



### 개요

-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여 위험상황 신고를 통해 작업중지권 행사하는 시스템 도입사례



### 사례1(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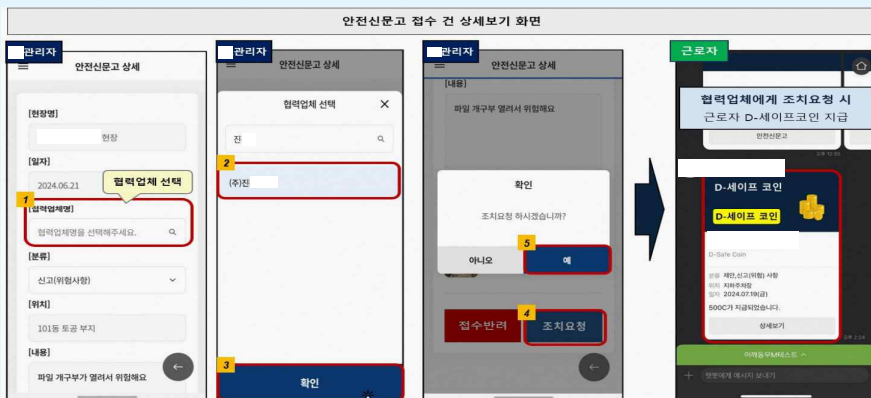
- 협력사 대상 카카오톡 채널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



① 근로자 : 카톡채널을 통해 안전신문고 접수 (사진, 위치 등 첨부)



### 사례1(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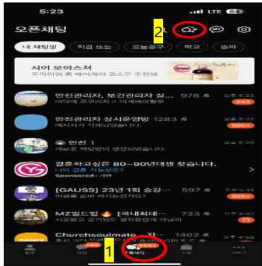
② 관리자 : 협력사에 조치요청 및 신고자에 코인(포상)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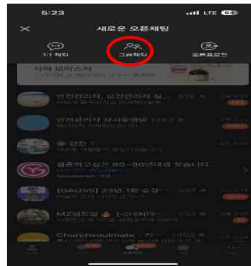
## 사례2(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QR 생성하여 작업증지권 신고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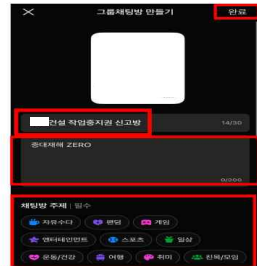
### 1. 작업증지권 QR 신고제 QR 생성방법(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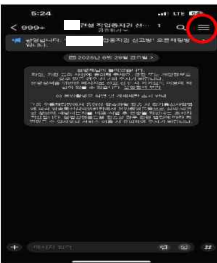
① 1번 오픈채팅 클릭 후  
2번 이모티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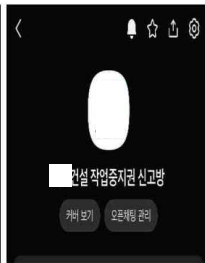
② 그룹채팅 클릭



③ 단독방 이름 및 기타설정  
후 완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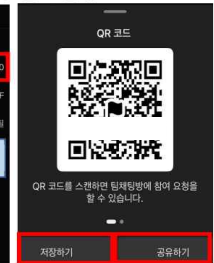
④ 단독방 개설 후 = 클릭



⑤ 오픈채팅 관리 클릭



⑥ 최대인원 설정(최대3000명)  
후 QR코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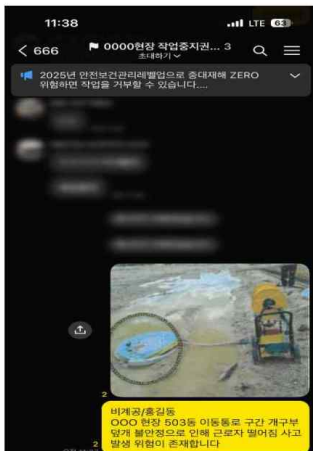
⑦ QR코드 생성완료  
(QR저장 및 공유)

###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운영 및 QR코드 생성



## 사례2(계속)

### ① 신고자 신고방법



### [QR신고 요령 예시: 급격한 위험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 해당 근로자 및 종사자 모두 신고 가능)

#### [신고자 입력방법]

- ① 직종 및 성함 입력(무기명으로 입력가능)
- ② 위치 및 위험요인 사항 입력
- ③ 위험요인 사진 등록

#### [관리자 확인사항]

- ① 관리자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② 위치 및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 ③ 위험요인 사진 등록
- ④ 위험사항에 따라 현장소장 최종 작업증지 승인 결정

### ② 신고자 : QR링크 등을 통한 오픈채팅방 신고 (사진, 내용 등 첨부)



## 사례2(계속)

### ② 개선조치결과와 등록방법



#### [QR등록 요령 예시: 개선조치결과 등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 해당 근로자 및 종사자 모두 신고 가능)

##### [개선조치 결과 입력방법]

- ① 개선조치 결과 사진 등록
- ② 위치 및 개선조치 결과 사항 등록
- ③ 위험요인 사진 등록

##### [관리자 확인사항]

- ① 관리자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② 위치 및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 ③ 위험요인 사진 등록
- ④ 위험개선 확인 후 현장소장 최종 작업중지 해제 결정

② 관리자 : 개선조치 결과 사항 및 사진 등록



## 사례2(계속)

### 4. 작업중지권 전산시스템 등록방법(작업중지권 관리대장으로 활용)

- ① 작업중지권 이행 등록(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내용, 관련 사진등록, 기타공종 등)

[전산시스템 등록 화면]



③ 관리자 : 작업중지권 이행현황 전산시스템 상 등록 및 현황관리





## 사례2(계속)

### 1. 작업중지권 QR 게시물 예시

**위험하면 작업하지 않습니다**  
**위험상황 즉시 신고 !!**  
**작업중지권 신고 QR**

**신고방법**  
[방법 1 : QR신고]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고 링크에 접속  
- 0000 현장 제1팀장 입장  
- 안전사고 위험 발생 상황 사진 및 내용 촬영  
[방법 2 : 유선신고]  
현장 사무실 : 02-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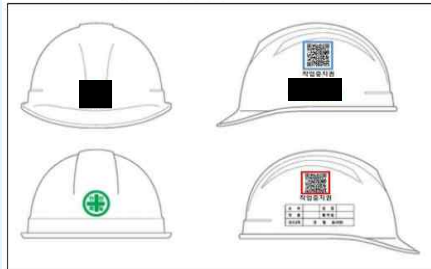
**2025년 중대재해 ZERO**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언제든지 신고해주세요!**  
**작업중지권**

**신고방법**  
- 손 카메라로 라벨코드를 찍고 링크에 접속  
- 양수상용동 현장 오른쪽팀장 입장  
-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발생 상황 사진 전송  
※ 현장사무실 031-856-6997으로 바로 신고

[QR 게시물 사이즈 : 600\*900 이상 ⇒ 조희장, 교역장, 휴게실, 주출입로 등 게시]

### 2. 작업중지권 안전모 QR스티커 부착 예시



[QR 안전모 스티커 사이즈 : 30\*40 ⇒ 안전모 우측 스티커 부착]

안전보건경영으로 중대재해 ZERO

# 작업중지권 안전을 지키는 권리

100000원강

## 위험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Safety Call: 010-0000-0000 / Kakaotalk: 00000

000000원강

### 4. 작업중지권 게시판(포스터) 예시

##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대피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

**000000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작업을 멈추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Safety Call: 010-0000-0000**  
**Kakaotalk: 000000**

## 급박한 위험상황 NO라고 외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침묵하면 근로자가 당면한 사업주에 불이익, 처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000000000000 현장**

[포스터 사이즈: A3 이상 ⇒ 교육장, 휴게실 등 게시]

④ QR포스터, 안전모 QR스티커,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신고제 홍보



# 모바일 시스템 도입 (별도 어플)



## 개요

- 별도 어플을 활용하여 위험상황 신고를 통해 작업중지권 행사하는 시스템 도입



## 사례1(D사)

- 사내 앱에 작업중지 메뉴 신설하였으며 현장 전 구성원 등록 가능 (익명성 보장)
- 협력사에서 조치사항 등록 후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자·작업중지자가 작업해제 결정

1. SMARTy 앱 작업중지 메뉴

2. 작업중지 등록

① 현장 전 구성원 등록 가능  
② 등록 사항 조사항 및 익명성 보장  
~ 사진, 내용, 협력회사명

3. 작업중지 접수 및 조치사항 등록

① 작업중지자가 지정한 협력회사 전 직원에 알림 발송  
② 협력회사 담당자 조치사항 등록

① 작업중지 발생 알림  
작업중지 발생 2025.2.3 오전 09:18  
현장의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알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② 조치사항 등록  
조치내용  
해당내용 교육 후 정기검사와 정기 재배치, 당해 협력사 직원 안전교육 등 작업 재개 예정입니다.

4. 조치사항 확인 및 작업해제

① 조치결과 확인 후 작업해제 결정  
※ 작업중지 해제 권한  
- 당사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 작업중지자



## 사례2(D사)

- 사내 앱에 작업중지권(현장위험보고) 메뉴 신설

### 작업중지권 현장위험보고 - 근로자 APP

**사용법 설명**

- 1 안전할 근로자 APP  
작업중지권 현장위험보고 선택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발송하는 기능"
- 2 신고보고 선택
- 3 현장위험보고 개요 기입 -> 보고사항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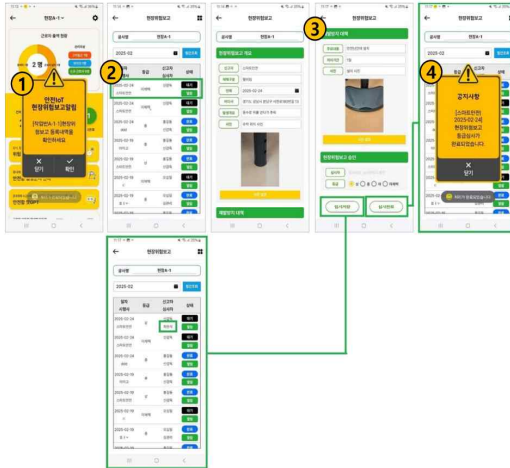
시행사  
재해구분  
시간  
장소  
발생개요  
사진 첨부

① 근로자 APP : 시간·장소·사진 등 첨부하여 현장위험보고



## 사례2(계속)

### 작업중지권 현장위험보고- 관리자 APP



#### 사용법 설명

- 1 근로자APP에서 현장위험보고 알림 전송  
→ 안전함 관리자 APP 알림 발생  
→ 관리자 확인후 현장위험보고 채택 심사 진행
- 2 관리자 현장위험보고 채택 항목 조회
- 3 현장위험보고에 대한 검토  
→ 개발방지 대책 기입  
→ 현장위험보고 승인 여부 확인  
→ 임시저장: 수정가능  
→ 심사완료: 최종 검토 완료
- 4 현장 위험보고 등급심사완료 후  
관리자/근로자 APP PUSH 알림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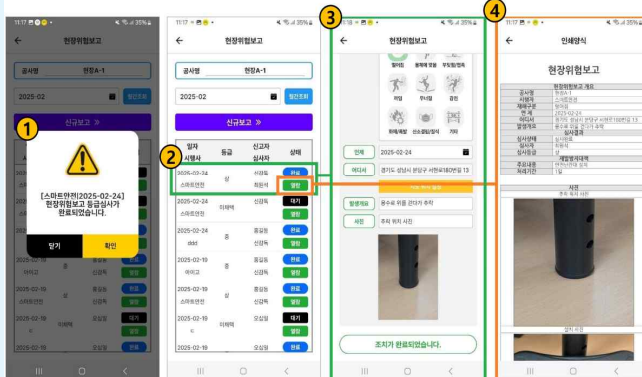
3

② 관리자 APP : 현장위험보고에 대한 대책 기입 및 위험등급 심사



## 사례2(계속)

### 작업중지권 현장위험보고



#### 사용법 설명

- 1 근로자 APP에서 현장위험보고 등급 심사 완료에 대한 내용 조회가능
- 2 현장위험보고 매뉴 진입  
→ 현장위험보고 개요 확인  
→ 심사 결과 열람 가능
- 3 현장위험보고 상세 화면 조회 화면
- 4 현장위험보고 인쇄화면 기준 열람 화면

4

③ 근로자 APP : '현장위험보고 등급 심사 완료'에 대한 내용조회 가능



### 사례3(사)

- 사내 앱을 통해 작업중지권 신고 및 조치하며, 협력사별 담당자 지정
-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우수 신고사례 인센티브 제공

○ 작업중지권 참여방법 홍보, QR/카톡/자체App 현황, 2시간내 조치 및 작업중지권 개선 전담조직 운영

- [참여] ■■■■■ App. 활용 근로자 작업중지 접수, 개선조치 피드백 ■■■■■ App. 사용률 70% 수준, 미사용 현장 발주처 보안 사유 등
- App 활용 익명성 보장,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확보

| 절차    | 세부 내용                            | 담당     |
|-------|----------------------------------|--------|
| 신고    | • 위치/내용 등 ■■■■■ App. 활용 신고       | 근로자    |
| 접수    | • 협력사별 담당자 신고내용 접수 및 현장 공유       | 협력사    |
| 개선/조치 | • ■■■■■ App. 활용 개선/조치 결과 신고자 피드백 | 물산/협력사 |
| 활용    | • 우수사례 안전 교안 및 위험성평가 반영          | 안전팀    |

- [홍보] 근로자 교육시 제도 안내, 우수사례 공지 및 인센티브
- 채용/정기 교육시 신고방법 및 사례 전파, 현수막 게시
- [전담] 협력사별 접수/조치 담당자 지정, 자체 피드백 강화
- 접수2시간내 최초 피드백(작업중지, 퇴거조치 등)원칙
- 협력사별 자체 개선/피드백, 협력사 개선 불가시 당사 통보/조치
-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비용 산정, 시스템 반영 업무 담당 등



# 포상제도 운영



## 개요

-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고 시 현금·포상품 등의 포상제도 운영



## 사례1(D+)

- 안전신문고 활동 건에 따라 현금(카카오페이)으로 교환 가능한 Coin 지급

### D-Safe coin 시스템 개발

1) 목적 및 배경

- D-Safe Coin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
- 근로자는 어캐동무m을 통해 안전신문고 활동으로 3,000 Coin 이상을 적립하는 경우 카카오페이로 전환하여 자유롭게 즉시 사용 가능

2) D-Safe Coin 지급 기준

| NO | 구분           | Coin    | 비고                  |
|----|--------------|---------|---------------------|
| 1  | 제안 신고(위험) 사항 | 500 C   | 일치대 5,000 Coin 적립가능 |
| 2  | 정전(무수사례)     | 500 C   |                     |
| 3  | TBM 미합석자신고   | 1,000 C |                     |
| 4  | 적립 중지권       | 1,000 C |                     |

3) 어캐동무M 가입방법

■ E&C

### D-Safe Coin 사용방법

◎ D-Safe Coin 적립 절차

◎ D-Safe Coin 확인방법



## 사례1(계속)

### D-Safe coin 홍보 포스터

### 사내방송(한술방송) 방영

포스터, 사내방송 등을 통한 포상제도 홍보



## 사례1(계속)



포스터, 언론매체 등을 통한 포상제 캠페인(우수현장 포상, 2배 적립 이벤트 등) 홍보



## 사례2(T사)

- 작업증지 요청 시 마일리지 누적하여 포상품으로 교환하는 제도 운영

### [부표] 작업증지 요청 근로자 마일리지 적립 및 포상 기준

| 마일리지   | 포 상 품        | 비 고                                                                                                                                   |
|--------|--------------|---------------------------------------------------------------------------------------------------------------------------------------|
| 300점   | 10만원 상당의 포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점 까지 마일리지 누적하여 포상</li> <li>- 작업증지 요청의 적절성 판단하여 마일리지 적립</li> <li>→ 무분별한 요청 제한</li> </ul> |
| 600점   | 30만원 상당의 포상품 |                                                                                                                                       |
| 1,000점 | 50만원 상당의 포상품 |                                                                                                                                       |

## 제3장

## 지침·기준

## 작업중지권 운영기준 예시



### 주요사항

- 작업중지권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 책임 및 권한, 업무절차, 요청방법 등 기재



### 예시

#### 1.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지침서는 작업 중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장 내 관련 조직,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용어의 정의

-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안전보건관계자 :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말한다.

#### 3. 책임과 권한

-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킨다.
  - 보고받은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중지 발생 시 시정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한다.
  - 작업중지 발생에 따른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권한을 부여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게시 및 전파 현황을 확인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 협력업체 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킨다.
  - 보고받은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중지 발생 시 시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
  -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킨다.
  - 작업중지 발생 시 시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 받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킨다.
  - 작업중지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 보고받은 위험의 확인 및 조치에 대한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 작업중지 발생에 따른 기록관리를 실시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작업을 중지 후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내용과 그에 합당한 사유나 근거를 구두보고, 유선으로 보고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보고받은 안전보건관계자는 4.업무절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발생된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안전보건관계자는 작업중지 또는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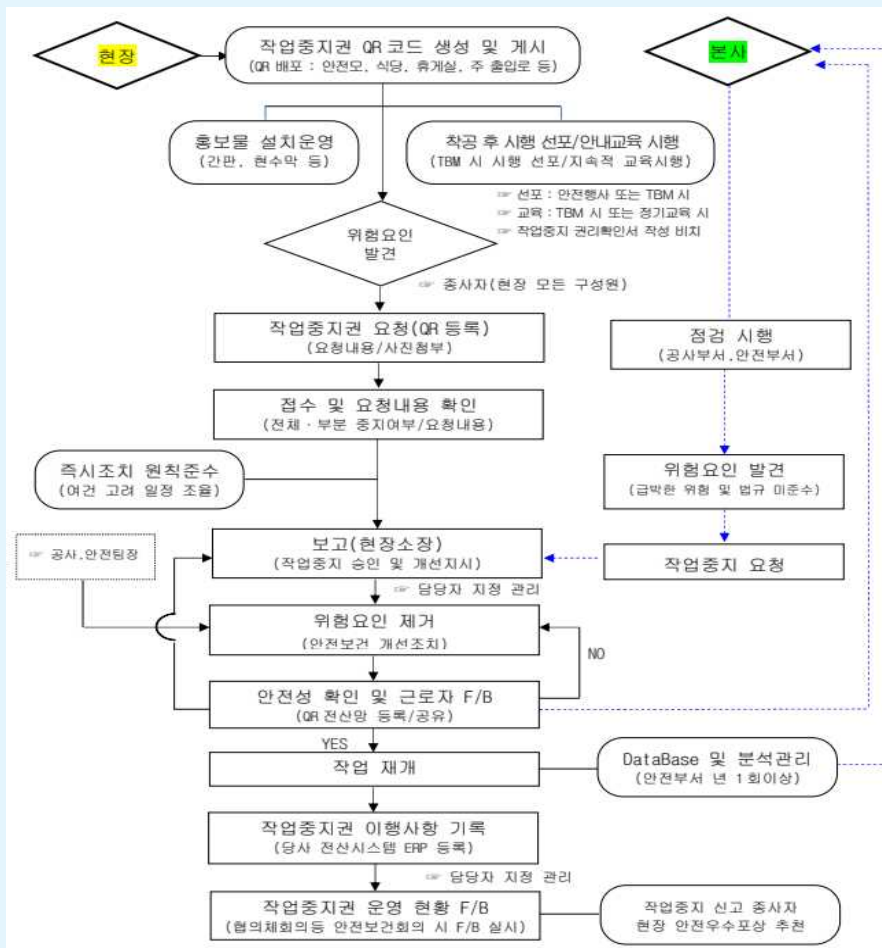
#### 4. 업무절차

- 작업중지기준
  - 급박한 위험 상황(붙임1 참고)을 인지하였을 경우(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
  - 위험상황(계절적 요인 포함)에서 업무 수행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위험상황이 지속되어 대형재해로 유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을 사전 교육(안내) 받지 못한 경우
  - 작업구간 내 상하 동시 작업 등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 기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무리한 작업을 지시 받는 경우





- 작업중지기준
  - 작업 중 또는 시작 전 위험 발견 시 종사자가 작업중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 운영하여 실시간 신고채널을 통해 요청한다. (QR신고제, 오픈채팅방, 사내APP 신고)
  - 작업 중 또는 시작 전 위험 발견 시 현장사무실에 유선보고 혹은 구두보고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절차



## 5. 교육

- 안전보건관계자는 근로자가 신규 투입될 때 또는 정기교육, TBM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해당절차를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등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불량으로 붕괴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정,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상, 하 동시작업 또는 공경간 간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붕괴, 낙하, 전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 제4장

## 부록

## 작업중지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정 발췌



### 발췌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작업중지권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주의사항

- 회시 내용에 있는 법령은 질의회시 당시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는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1

####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 ㉔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 ㉕ 회시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 근로자 안전활동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문

-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 전파 협조 요청

1. 평소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현대건설(H-안전지갑) 운영 사례 -

가. 도입배경: 건설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 조성

나. 주요내용: 회사에서 당일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고 근로자가 App을 통해 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 시 현금성 포인트 지급\*(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 1달 최대 30,200 포인트, 분기별 우수 신고·제안자를 선정하여 100,000포인트 지급

3. 위의 사례와 같이 건설사 자체적으로 App을 개발하여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포인트 비용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성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25.2.12.」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로 사용 가능(시행일: '25.11.1일부터, 다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App 개발 비용은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회원사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노조총연합회, 한국정비통신공사협회중앙회,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전문위원 류재은 시설사무관 권오준 서기관 정권 10/22  
 협조자 홍효정

시행 건설산업예방감독과-122 ( 2025. 10. 22. ) 접수 기술안전실-950 ( 2025. 10. 22. )

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3층 건설산업예방감독과 / www.moeil.go.kr

전화 044-202-8942 /전송 044-862-8075 / csilver55@korea.kr / 비공개

# 작업중지권 관련 고용부 설명자료('19.1)



## 발췌내용

### 16.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 1. 개정배경

##### □ 현행규정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하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제26조(작업중지 등)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음

##### □ 문제점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하면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동 규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 특히, 그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서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도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우려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 개정내용

- **(근로자의 작업중지) 별도 조문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를 명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에 대한 예시**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작업중지권 활용 가능 APP(건설안전패스)



홍보포스터



## 건설안전패스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로 만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① 건설안전패스란?

건설안전패스(App)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건설현장 전용 안전보건 앱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4시간의 기초교육을 받아야 함



근로자화면



모바일 이수증



관리자 화면



안전신고·관리

### ② 건설안전패스(Pass&Path),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이수증 관리



근로자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이수증을 쉽게 발급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물 이수증을 소지하거나 분실 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 출입 기록, 교육 이수 증명서 조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관리자

#### 안전 관리



근로자

작업 중 현장 내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내 위험 경보·공정별 안전수칙을 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쉽고 편리한 **건설안전패스**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 안전신고·관리 기능을 이용한 작업중지권 행사



## ○ 근로자-안전신고 기능



① 현장 내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고” 선택



② 신고내용 작성 및 사진 등록



③ “등록” 선택  
- 관리자에게 알림 발송 및 신고내역 전달

## ○ 관리자-안전신고 확인 및 답변 기능 (1)



① “안전신고 관리” 선택



② “안전신고 관리” 선택



③ “답변 전” 신고내역 선택



## ○ 관리자-안전신고 확인 및 답변 기능 (2)

1 세부 신고내역 확인 후  
조치 내용 입력

2 “답변하기” 선택

- 현장 출역 근로자 모두에게 내용 공지 및 알림 발송

## ○ 근로자-안전신고 답변 확인 기능

1 “안전공지” 선택

2 “안전신고” 탭에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조치 답변 확인

3 세부 답변 내용 확인



## ○ 관리자-위험정보 발송 기능

위험정보

1 "위험정보" 선택

위험요인

☐ 지정 ☒ 지정안함

2 "위험요인-지정안함" 선택

정보 내용

0/50

3 세부 정보내용 직접 입력 후 발송  
- 현장 출역한 전체 근로자에게 발송

위험요인

☒ 지정 ☐ 지정안함

1 "위험요인-지정" 선택  
- 제공되는 지정 문구 발송

공정/직종을 선택하세요.

공조공사

이동식비계, 기구집·동바리, 트럭, 크레인, 굴삭기,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 더보기

2 공정/직종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안전정보 선택

선택된 위험요인 텍스트

이동식비계

크레인

3 선택된 위험요인 내용 확인 후 발송  
- 현장 출역 전체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위험정보 알림 수신 기능



1 “안전공지” 선택



2 “위험정보” 탭에서 관리자가 발송한 위험정보 내용 확인